KAIRB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

5-2 인체유래물은행

중앙의대 이미경 교수

Part 5. 은행 검체

- 본 슬라이드는 IRB 설치, 운영, 교육에 도움을 드리고자 **해당 경험을 가진 IRB 관련 전문가의 개인 의견**을 제시한 것으로 **KAIRB의 공식입장과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.**
- 본 슬라이드는 IRB행정, 위원, 연구자, 기관의 관계자 교육 때 사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
- 필요한 슬라이드를 추출하여 **출처를 명기한 후** 교육에 활용하십시오. 특히, IRB 정규 심사 때 관련 이슈를 **짧게 교육**하는 교재로 널리 활용되길 바랍니다.

-저자일동-

KAIRB
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

IRB 관계자 교육을 위한,
『골라쓰는 IRB 교육자료』

KAIRB 편집위원회 : 컨텐츠개발 분과위원회

- **기본 슬라이드 작성** (가나다순)
  김명아 (서울의대 보라매병원), 김성신 (순천향의대 부천병원), 김영인 (서울성모병원), 배현아 (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), 신임희 (대구가톨릭의대), 신희영 (전남대병원), 엄태현 (일산백병원), 이경훈 (서울여성병원), 이미경 (중앙대병원), 이선주 (경희대병원), 임양순 (서울성모병원), 임현우 (가톨릭의대: 컨텐츠 개발 분과위원장), 한승훈 (서울성모병원)

- **편집** (가나다순)
  김봉재 (가톨릭의대), 김윤남 (인하대병원), 이세현 (가톨릭의대), 이혜진 (삼성서울병원),
  대구가톨릭의대 의학통계학교실(고경목, 곽상규, 권도윤, 권오승, 남준엽, 이진혁, 정재홍)

- **자문** (가나다순)
  김정수 (의정부성모병원), 백상홍 (서울성모병원), 오상철 (고대구로병원), 전미선 (아주대병원)

『골라쓰는 IRB 교육자료』 목차

주 제	목 차
Part 1. 윤리강령, 역사적 사건 및 배경	1-1. Nuremberg Cord와 헬싱키 선언
	1-2. 터스키기 사건과 Belmont report
	1-3. 윤리와 법
	1-4. ICH GCP
Part 2. IRB	2-1. IRB의 구성 및 운영
	2-2. 심사의 대상 판정 및 심사의 종류
	2-3. IRB심의
	2-4. 위험 이익 평가
	2-5. 취약한 피험자
	2-6. 광고문구&사례비 심사
	2-7. 면제 및 신속심사
	2-8. 지속심의
	2-9. 이상반응 보고 및 심의
Part 3. 피험자 동의	3-1. 동의서 구성요소
	3-2. 동의서 평가방법
	3-3. 동의의 면제
	3-4. 임산부대상연구에서의 동의취득
	3-5. 소아대상연구에서의 동의취득
	3-6. 응급환자대상연구에서의 동의
	3-7. 인지능력저하자 대상 연구에서의 동의취득

주 제	목 차
Part 4. 연구자의 역할 및 책임	4-1. 동의 취득 과정
	4-2. 연구자의 책임과 권한위임
	4-3. 문서관리
	4-4. IRB에 보고해야 될 사항
	4-5. 연구자원 확보와 교육이수
Part 5. 은행 검체	5-1. 인체유래물 연구
	5-2. 인체유래물 은행
Part 6. HRPP 조직	6-1. COI
	6-2. HRPP component
	6-3. 점검 평가
	6-4. HRPP 교육
	6-5. 인증
	6-6. 법적 준거기준
Part 7. 기타	7-1. 임상시험용 신약 절차 이해
	7-2. 시험약의 응급사용
	7-3. 배아연구

KAIRB
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

1. 인체유래물은행이란?

인체유래물과 인체유래물은행의 정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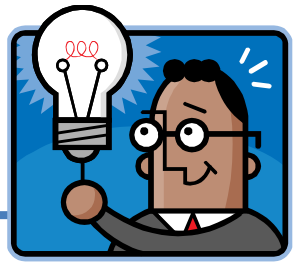

- "**인체유래물**"이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 · 세포 · 혈액 · 체액 등의 인체구성물 또는 인체구성물로부터 분리된 혈청, 혈장, 염색체, DNA (Deoxyribonucleic acid), RNA (Ribonucleic acid), 단백질 등을 말함(제2조제11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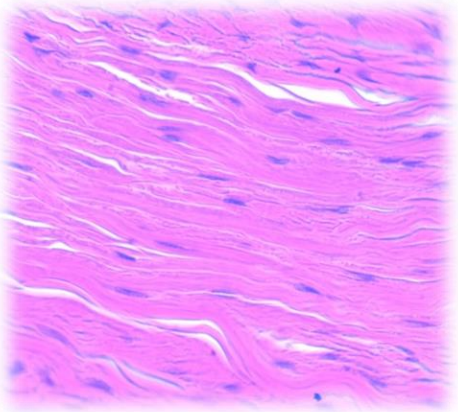

인체유래물과 인체유래물은행의 정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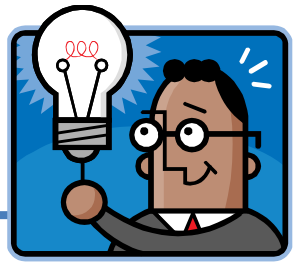

- "**인체유래물은행**"이란 인체유래물 또는 유전정보와 그에 관련된 역학정보, 임상정보 등을 보존하여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기관

인체유래물은행의 분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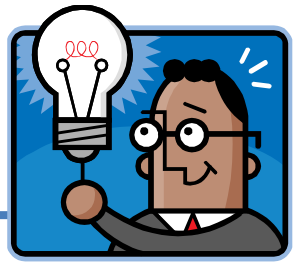

1. 인체유래물 + 유전정보, 역학정보, 임상정보 등을 수집·보존하는 은행(Biobank 개념)
2. 인체유래물은 수집·보존하지 않고, 유전정보나 인체유래물과 관련된 역학정보, 임상정보 등 정보만 수집·보존하는 은행(유전체분석 등 Bioinformatics를 위해 정보를 수집·보존하는 정보 Storage 개념)

인체유래물은행의 활용

- 질병의 기전 및 병인 연구
- 역학 연구
- 임상 시험
- 진단용 제품의 개발 및 평가
- 표준물질 또는 정도관리물질 등의 개발

KAIRB
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

2. 인체유래물은행의 허가 및 변경

인체유래물은행의 허가

- 인체유래물은행의 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(제41조)
- 인체유래물은행을 개설하려는 기관은 **허가신청서**(별지 제36호서식)와 서류를 구비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(시행규칙 제37조)

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36호서식]

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30일

신청기관	기관명	법인등기번호 사업자등록번호	
	기관장 성명	전화번호	
	소재지		
인체유래물은행	은행명	전화번호	
	은행장 성명		
	소재지		

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기관장) (서명 또는 인)

질병관리본부장 귀하

제출서류	1. 공통 제출서류 가. 시설·인력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나.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을 적은 서류 또는 기관위원회 협약서 다. 보관 중인 인체유래물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라. 인체유래물등 제공 및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지침서 2. 법인인 경우 가. 정관 1부 나. 사업계획서 1부 3. 법인이 아닌 경우: 사업계획서 1부	수수료 10,000원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인 경우: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. 법인이 아닌 경우: 사업자등록증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주민등록번호 : 신청인 (기관장) (서명 또는 인)

처리 절차

신청서 작성	→	접 수	→	검 토 (현지 확인)	→	결 재	→	허가증 발급
신청인		처리기관 (질병관리본부)		처리기관 (질병관리본부)		처리기관 (질병관리본부)		처리기관 (질병관리본부)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인체유래물은행의 허가

-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연구비 지원의 승인을 받아 인체유래물은행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,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연구비 지원의 승인을 받은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.

보건복지부

인체유래물은행의 허가를 위한 서류(1)

1. 법인인 경우: 정관 및 사업계획서
2. 법인이 아닌 경우: 사업계획서
3. **시설 및 인력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**
4. IRB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을 적은 서류 또는 협약서
5. 보관 중인 인체유래물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
6. **인체유래물 등의 제공 및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지침서**

인체유래물은행의 허가를 위한 서류(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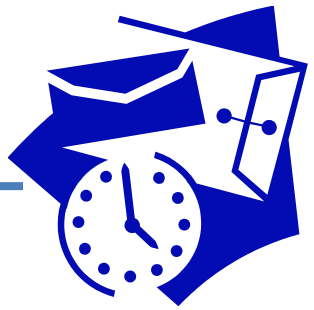

3. 시설 및 인력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

시설기준	장비기준	인력기준
• 정보관리실 • 인체유래물 처리실 • 인체유래물 저장실 • 세포배양실(필요시)	• 냉장고, 냉동고 • 초저온 냉동고 • 원심분리기 • 멸균기 • 전산장비, 데이터시스템 • 액체질소탱크(필요시)	• 정보의 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 1명 이상 • 인체유래물 등의 관리 및 연구를 위한 연구자 2명 이상 (또는 1명 이상)

1) 인체유래물 및 유전정보 등의 관련 정보를 수집·보존하는 경우
(위의 모든 기준 구비)

2) 인체유래물 없이 유전정보 등의 정보만 수집·보존하는 경우
(청색 기준 구비)

인체유래물은행의 허가를 위한 서류(3)

6.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지침서

- 인체유래물은행은 인체유래물 제공에 있어서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지침을 가지고 있어야 함
- 인체유래물은행은 인체유래물의 익명화 과정, 기증자의 개인식별정보의 보호를 위한 방법 및 정책(안전대책) 등을 기술한 지침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함
- 지침서는 IRB에서 심의 받고 인체유래물은행 표준운영지침서 등에 포함되어 은행 및 IRB 운영에 활용되어야 함

인체유래물은행의 신고(연구비 지원 시)

-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연구비 지원의 승인을 받아 인체유래물은행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, **아래의 절차**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.

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
인체유래물은행 개설에 대한 협의 요청(공문)

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(개인) 대상
인체유래물은행 연구비 지원 승인

신청서에 연구비 승인 공문, 시설 및 인력현황, IRB 구성 현황, 보관 중인 인체유래물 등 현황을 첨부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신고

인체유래물은행의 변경신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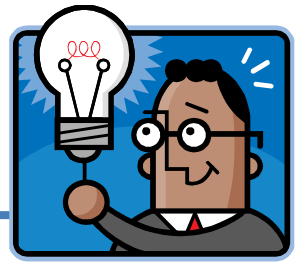

-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**변경사항**

  (법 제41조제3항 및 시행령 제17조)

  1) 인체유래물은행의 소재지

  2) 기관장 또는 기관의 명칭

  3) 인체유래물은행의 시설·장비 및 인력

- **인체유래물은행 변경신고서**(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)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(시행규칙 제38조)

  1)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증 원본

  2)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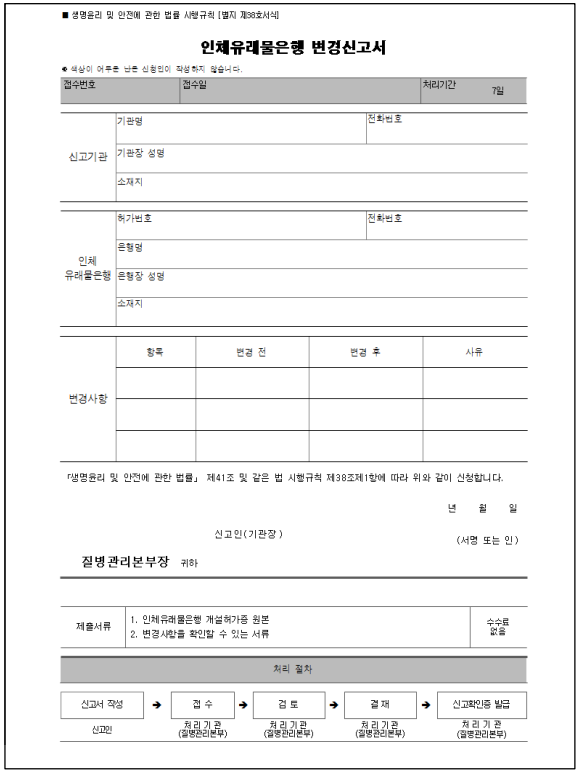

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38호서식]

인체유래물은행 변경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7일

신고기관	기관명	전화번호
	기관장 성명	
	소재지	
인체유래물은행	허가번호	전화번호
	은행명	
	은행장 성명	
	소재지	

변경사항	항목	변경 전	변경 후	사유

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(기관장) (서명 또는 인)

질병관리본부장 귀하

제출서류	1.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증 원본 2.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없음

처리 절차

신고서 작성 (신고인) → 접수 (처리기관 (질병관리본부)) → 검토 (처리기관 (질병관리본부)) → 결재 (처리기관 (질병관리본부)) → 신고확인증 발급 (처리기관 (질병관리본부))

KAIRB
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

3. 인체유래물은행의 휴·폐업

인체유래물은행의 휴·폐업 신고

-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
- **인체유래물은행 휴·폐업신고서**(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)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 또는 폐업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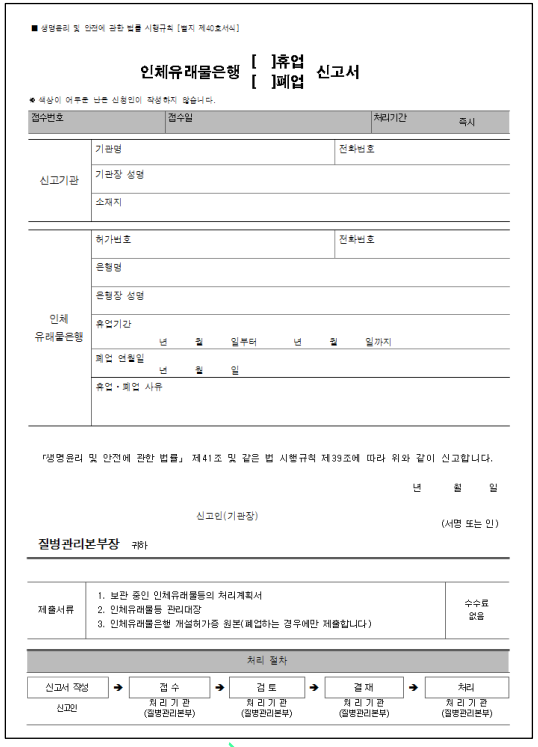

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40호서식]

인체유래물은행 [ ]휴업 [ ]폐업 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즉시

신고기관	기관명	전화번호
	기관장 성명	
	소재지	
인체유래물은행	허가번호	전화번호
	은행명	
	은행장 성명	
	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	
	폐업 예정일 년 월 일	
	휴업·폐업 사유	

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(기관장) (서명 또는 인)

질병관리본부장 귀하

제출서류	1. 보관 중인 인체유래물등의 처리계획서 2. 인체유래물등 관리대장 3.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증 원본(폐업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	수수료 없음

처리 절차

신고서 작성	→	접 수	→	검 토	→	결 재	→	처 리
신고인		처리기관 (질병관리본부)		처리기관 (질병관리본부)		처리기관 (질병관리본부)		처리기관 (질병관리본부)

1) 보관 중인 인체유래물 등의 처리계획서

2) 인체유래물 관리대장(별지 제35호 서식)

3)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증 원본(폐업 시만 해당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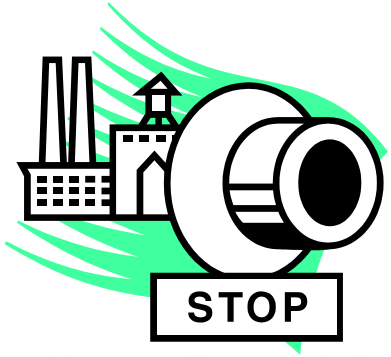

인체유래물은행 휴·폐업 후 인체유래물의 처리

- IRB 심의를 거쳐 폐기 또는 이관하여야 함 (제36조)

1) [폐기물관리법] 제13조에 따른 기준 및 방법에 따른 폐기

2) 다른 인체유래물은행 또는 질병관리본부로 이관

- 폐기에 관한 사항(폐기일시, 폐기량, 폐기방법 등)을 기록하여 폐기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함

KAIRB
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

4. 인체유래물등의 채취 및 제공

인체유래물은행의 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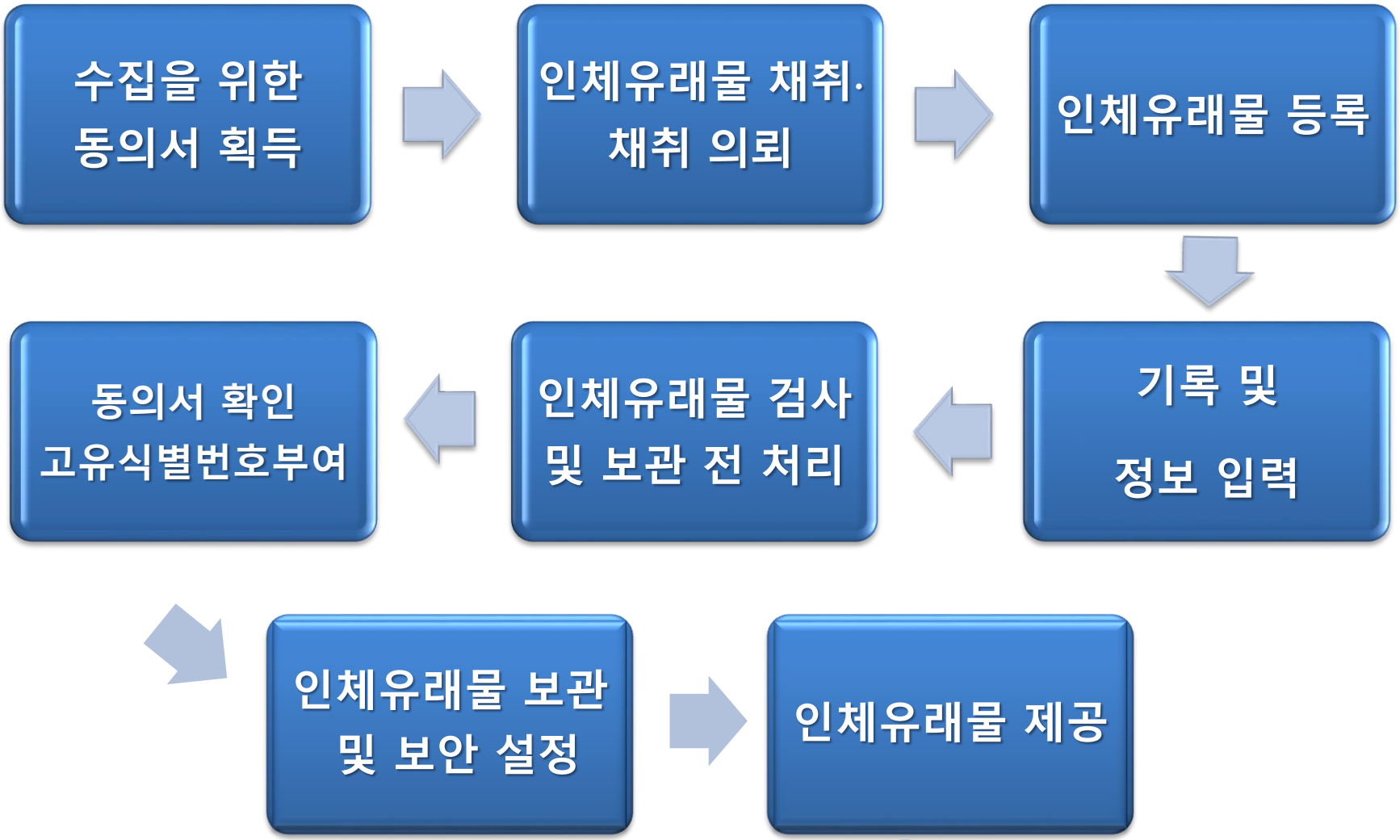
수집을 위한 동의서 획득
인체유래물 채취·채취 의뢰
인체유래물 등록
기록 및 정보 입력
인체유래물 검사 및 보관 전 처리
동의서 확인 고유식별번호부여
인체유래물 보관 및 보안 설정
인체유래물 제공

인체유래물은행에 수집 가능한 인체유래물

1. 인체유래물은행이 직접 채취한 경우
2.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채취한 검체 중 본래 진료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검체(단, 해당 기증자의 진료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인체유래물은 수집될 수 없음)
3. 생명윤리법 상의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유전자검사 후 남은 검사 대상물로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제공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검사대상물
4. 기타 인간대상연구 또는 인체유래물연구 등에서 수집·이용되고 남은 인체유래물

인체유래물의 채취

- 인체유래물이 침습적 방법에 의해 채취되는 경우에는, 반드시 의료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.
- 조직의 경우, 병리의사가 육안으로 검사하여 연구용으로 수집·이용 가능한 부분을 결정하고 분리함.
- 인체유래물은행의 종사자는 수집될 인체유래물을 그 특성에 맞게 적절한 보관용기 및 방법을 택하여 보관하여야 함.

인체유래물의 채취 시 동의서 획득

- 인체유래물 연구에 쓰일 인체유래물을 직접 채취하거나 채취를 의뢰하는 경우, 서면동의를 받아야 함(별지 제41호 서식)

- 동의를 획득하기 위해 반드시 설명되어야 하는 사항(제42조)

1) 인체유래물 연구의 목적
(인체유래물은행이 인체유래물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)
2)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에 관한 사항
3) 인체유래물등이 제공되는 연구자 및 기관의 범위에 관한 사항
4) 인체유래물등의 보존, 관리 및 폐기에 관한 사항
5) 동의의 철회, 동의의 철회 시 인체유래물등의 처리, 인체유래물기증자의 권리 등

인체유래물등의 기증 동의서 [별지 제41호 서식]

인체유래물등의 기증 동의서

(앞쪽)

동의서 관리번호			
인체유래물등 기증자	성 명		생년월일
	주 소		
	연락처		성별
법정대리인	성 명		관계
	연락처		
인체유래물 은행	기관 명칭		
	연락처		

이 동의서는 귀하로부터 수집된 인체유래물등(인체유래물과 그로부터 얻은 유전정보를 말합니다)을 귀하의 역학정보 및 임상정보 등과 함께 인체유래물은행에 보관하며 질병의 진단 및 치료법 개발 등의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동의를 밝히는 것입니다. 따라서 귀하는 다음의 내용을 읽고 궁금한 사항은 상담자에게 묻고 충분히 생각한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

1. 인체유래물이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·세포·혈액·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, 혈장, 염색체, DNA, RNA, 단백질 등을 말하며, 귀하는 귀하의 인체유래물을 채취하기 전에 채취 방법 및 과정에 관한 설명을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.
2. 귀하가 제공한 인체유래물등은 인체유래물은행에 동의한 날부터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보존되면서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지침에 따라 향후 질병의 진단·예방·치료법 개발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연구에 보존·관리·연구·분양에 이용될 것이며,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3. 인체유래물은 은행의 장이 이용계획서를 검토하여 국민의 건강 향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에게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과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제공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제공됩니다.
4. 귀하가 이 동의서를 통해 인체유래물등의 기증에 동의한 경우, 인체유래물은행은 질병의 진단 및 치료방법 개발 등의 연구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귀하의 임상·역학정보 등의 개인정보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수집된 개인식별정보는 보호됩니다.
5. 귀하가 제공한 인체유래물등은 귀하의 개인식별정보와 분리 보관 될 것이며 인체유래물등과 관련 정보를 연구자들에게 제공할 때에는 귀하의 개인식별정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
6. 인체유래물등은 인체유래물은행의 폐업,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체유래물등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인체유래물등을 폐기하거나 이관하게 됩니다.
7. 연구결과에 따른 새로운 약품이나 진단도구 등 상품개발 및 특허출원 등에 대해서는 귀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, 귀하가 제공한 인체유래물등을 이용한 연구는 학회와 학술지에 연구자의 이름으로 발표되고 귀하의 개인정보는 드러나지 않습니다.

※ 위의 모든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, 작성된 동의서 사본을 1부 받아야 합니다.

연구 목적	(인체유래물은행이 직접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)

(뒤쪽)

여러 번의 인체유래물 채취되는 경우 관련내용

본인은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위 인체유래물등의 기증과 관련하여 인체유래물등의 수집 및 보관, 이용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어 이해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본인의 인체유래물등을 기증하는 것에 자발적인 의사로 동의합니다.

동의서 작성일 년 월 일

인체유래물등 기증자 (서명 또는 인)

법정대리인 (서명 또는 인)

상담자 (서명 또는 인)

인체유래물등의 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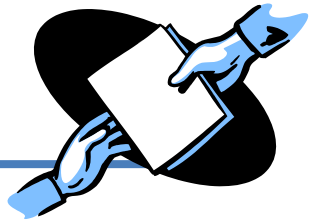

- 인체유래물은행은 연구자에게 이용계획서를 제출 받아 심의한 후 보관 중인 인체유래물 등을 분양할 수 있음
- 익명화하여 제공
- 무상제공 원칙(보존과 보관 등에 든 실비는 징수 가능)
- IRB는 인체유래물등의 제공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,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심의하여야 함
- 인체유래물은행의 장은 인체유래물을 제공하고 그 제공 현황을 연 4회 이상 IRB에 보고하여야 함
- 인체유래물등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함

인체유래물등의 제공 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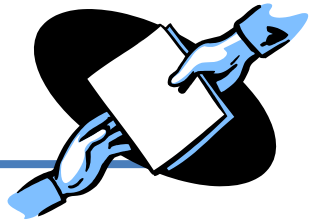

연구자
: 이용계획서 제출

인체유래물은행
(자원분양위원회)
: 내용 검토

제공여부 결정

이용계획서 내용

1. 인체유래물등의 이용목적
2. 인체유래물등의 연구 방법
3. 제공받으려는 인체유래물등의 종류 및 수량에 관한 사항
4. 인체유래물등의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

제공받은 연구자의 준수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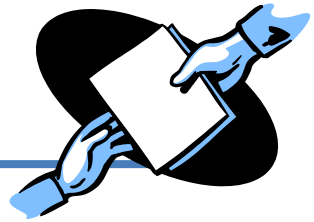

- 연구자는 연구 전반을 총괄하며 연구에 대한 책임이 있음
- 생명윤리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인체유래물은행 또는 관련 정부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는 경우, 이에 응하여야 함
- 이용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연구를 진행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, 즉시 해당 인체유래물을 제공받은 은행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
- 제공받은 인체유래물을 사용하고 남은 경우, 이를 임의로 타 기관 또는 타 연구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
- 연구 중에 알게 된 기증자에 대한 중대한 사항이 기증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, IRB의 승인을 받아 제공할 수 있음

KAIRB
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

인체유래물은행의 운영

인체유래물은행의 준수사항

선의의 관리 의무

익명화 의무

개인정보 보호 의무

인체유래물은행의 준수사항

- **선의의 관리 의무**

  보존중인 인체유래물 등을 타당한 사유 없이 사용, 폐기, 손상해서는 아니 됨

  인체유래물등의 보존 및 폐기는 법률에 따라 준수함

- **익명화 의무**

  인체유래물등을 익명화하여야 함

- **개인정보 보호 의무**

  인체유래물등의 익명화 방안이 포함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마련하고, 개인정보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

개인정보 보호 지침(시행규칙 제42조제1항)

- 인체유래물등과 동의서 관리에 필요한 익명화 방법
- 물리적, 행정적 개인정보보호방법
- 개인정보 제공시 정보 제공 방법
- 인체유래물은행의 휴·폐업 시 보관중인 인체유래물의 이관에 따른 개인정보처리 방안
- 인체유래물등 폐기 시에 개인정보 처리방안
- 인체유래물은행의 직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

인체유래물은행 관리를 위한 IRB의 역할

- 인체유래물은행 지침서 심의
- 인체유래물은행 운영에 관한 심의

  : 지침에 따라 인체유래물등이 적정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심의
- 인체유래물등의 제공현황 점검

  : 인체유래은행으로부터 제공현황을 보고받음(연 4회 이상)
- 인체유래물등의 폐기 등 심의

  : 인체유래물등을 부득이한 사유로 보존할 수 없는 경우 IRB 심의를 거쳐 폐기 또는 이관

인체유래물은행에서 인체유래물 분양된 연구의 관리

- 인체유래물 분양할 때 연구계획서의 과학성과 윤리성 검토
- 연구계획서에 따라 연구가 진행되는지 평가
- 연구종료 후 잔여 인체유래물 현황 파악
- 분양된 인체유래물을 이용한 연구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
- 분양된 인체유래물을 이용한 연구의 이익 발생 시

  배분에 관한 사전 협의

KAIRB
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

Thank you for your attention!